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 안내(2022年)

■ 재가급여는 사용하신 총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별로 산정한 본인부담금에 따라 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사용하신만큼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 | | |
|--------|------------|----------|-----------|-----------|----------|
| | | 일반(15%) | 감경대상자(9%) | 감경대상자(6%) | 기초생활수급권자 |
| 1등급 | 1,672,700원 | 250,900원 | 150,540원 | 100,360원 | 면제 |
| 2등급 | 1,486,800원 | 223,020원 | 133,810원 | 89,200원 | |
| 3등급 | 1,350,800원 | 202,620원 | 121,570원 | 81,040원 | |
| 4등급 | 1,244,900원 | 186,730원 | 112,040원 | 74,690원 | |
| 5등급 | 1,068,500원 | 160,270원 | 96,160원 | 64,110원 | |

■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

| 방문 요양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
|----------|--------|--------|--------|--------|--------|--------|--------|--------|
| | 15,430 | 22,380 | 30,170 | 38,390 | 44,770 | 50,400 | 56,170 | 61,950 |

■ 방문목욕 급여비용 수가

| 방문 목욕 | 차량이용(차량내) | 차량이용(가정 내) | 차량 미 이용 |
|----------|-----------|------------|---------|
| | 78,560 | 70,580 | 44,240 |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참고사항

★ **1,2등급 어르신**의 경우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4시간 이상 초과이용(최대 480분)은 월 4회만 가능합니다. 4시간 이상 초과를 월 4회 이상 할 때는 한도액 상관없이 **100% 본인 부담**입니다.

예) 월 6회 7시간 이용 => 월 4회까지는 수가 산정하여 장기요양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초과된 2회에 대한 부분은 100% 본인 부담합니다.

★ **3,4등급 어르신**의 경우 하루 최대 3시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3시간 이상 초과이용(최대 480분)은 월 4회만 가능합니다. 3시간 이상 초과를 월 4회 이상 할 때는 한도액 상관없이 **100% 본인 부담**입니다.

★ **5등급 어르신**의 경우 하루 최대 3시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서비스시간 초과이용은 불가합니다.

★ 하루에 두 번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2시간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한도액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시간 간격을 지켜주셔야 장기요양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9:00~11:00 방문요양 서비스 받으시고, 최소 2시간 간격 이후에 13:00~15:00 방문요양 서비스 가능합니다.

★ 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급여비용의 50%가 가산되며, 일요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엔 급여비용의 30%가 가산됩니다.

★ 서비스 비용은 후불입니다. (서비스 제공월 다음 달 월 초~중순경 우편물로 고지서 보내드립니다. 우편물 열람이 힘든 경우, 우편물과 동시에 문자발송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성함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정확한 금액을 계좌이체 해주시면 됩니다. 매월 사용하신 서비스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 고지해드리므로 자동이체는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은 개별적으로 기관에 말씀해 주시는 분에 한해 발급해드리고 카드결제는 본 기관을 내방해 주시면 결제 가능합니다. 서비스 비용에 대한 연말정산은 “의료비” 항목으로 포함됩니다.